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62호 2018. 6.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 · 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 · 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6호 대곡3-2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입법예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1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89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2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9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4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7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8. 6. 4.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종점연장)
4. 변경사유 : 도로 신설로 인한 끝지점 연장(북항로193번길)
(붙임 조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내역	도로명	기 점		종 점		중심선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시작	끝				
1	기존	북항로193번길	원창동	395-2	원창동	393-37	도면 참조	652	12	20	1	66	신현원창동	2018.6.4.	없음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지점 왼쪽 으로 분기되는 도로
	변경		원창동	395-2	원창동	395-1		1300	12	20	1	130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남로 227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6. 0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6-04

순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7-22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203-1 (석남동)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1-5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227 (석남동)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6-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64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을 연못)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01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6-1, 996-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26 (마전동)	20081231	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4-11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2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2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67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17, 64-41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71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14, 64-224, 64-415, 64-418, 64-41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73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15, 64-418, 64-41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77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4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45번길 13-27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0-31, 520-3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260번길 16 (석남동)	20090922	염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3-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21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66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9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76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남용방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목적(안 제1조)
-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안 제2조)
-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안 제3조)
- 과징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5893,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1. 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남용방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규칙안 제2조)
- 감경제외대상(규칙안 제3조)
-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규칙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안 : “별지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	30%	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공통기준 적용 [별표2]	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판매액이 1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이 5인 미만	출입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	출입인원이 10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별표 2] 공통기준: 감경 50% 적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6. 만 65세 이상의 고령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8.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9. 만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10.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나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		
	위반일자	행정처분일자	위반내용

감경 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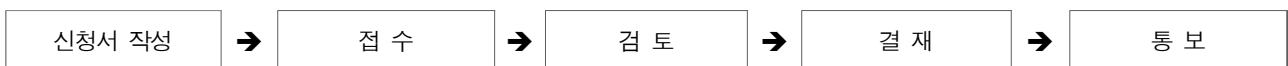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 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illegible]

1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31호선)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9-9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 신설 (연장: 430m, 폭원: 10m)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31	10	국지 도로	430	소로1-30	시천동 37-3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로 1-31	°도로 신설 - 연장(L) : 430m, 폭(B) : 10m	°서구와 계양구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면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양 구청간 협의기간 소요 및 과도한 공사비로 인해, 우선 마을안길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선 신설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311호선)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일원(마전지구 ~ 삼라마이더스APT)

○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 신설 (연장:340m, 폭원:10m)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311	10 (10~22)	국지도 로	340	중2-190 (마전지구계)	대곡동 산199-3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로 1-311	°도로 신설 - 연장(L) : 340m - 폭(B) : 10m(10~22)	°현황도로인 대곡로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통해 도로 폭원을 확장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노선 신설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서구 제2018-8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6. 4. ~ 2018. 6. 18.(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 정 처 분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39조4329 외 13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 행 정 지 사 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39조4329	임병*	2018.05.29	
2	64조7585	최미*	2018.05.25	
3	97보6553	이정*	2018.05.18	
4	26어5661	유충*	2018.05.16	
5	20도2304	(주)서인토*	2018.05.14	
6	06누9819	이영*	2018.05.10	
7	26로6447	심미*	2018.05.09	
8	45누6988	한창*	2018.05.07	
9	20구0290	이준*	2018.05.04	
10	91소1326	안순*	2018.05.03	
11	57도6356	여봉*	2018.05.03	
12	62버7553	양재*	2018.05.03	2018.05.04. 해제
13	81머3356	고해*	2018.05.02	
14	27너4108	심상*	2018.05.0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26호

대곡3-2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9-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제안한 (가칭)대곡3-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

가. 구역명칭 : 대곡3-2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9-1번지 일원

다. 면 적 : 812,400m²

라.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가칭)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12,400	100.0	
주 거 용 지	소 계	426,780	52.6	
	단 독 주 택	51,920	6.4	
	공 동 주 택	354,120	43.6	
	준 주 거	20,740	2.6	
상 업 용 지	일 반 상 업	19,690	2.4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365,930	45.0	
	도 로	154,140	19.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800	0.2	
	공 원	83,020	10.2	
	녹 지	41,520	5.1	
	주 차 장	7,640	0.9	
	학 교	32,370	4.0	
	광 장	4,080	0.5	
	공 공 청 사	5,620	0.7	
	하 천	29,820	3.7	
	유 수 지	5,920	0.7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478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032-560-3230)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배치되는 자치법규 별지 제10호서식(허가조건) 조항 일부 삭제
-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3 (FAX 560-2720)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배치되는 자치법규 별지 제10호서식(허가조건) 조항 일부 삭제
-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지정된 자”를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가”를 “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지와”를 “현황과”로,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를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지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유

제6조 중 “불후의”를 “훼손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유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간”을 “회계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인

제10조제2항 중 “긴급한 처리를 요”를 “긴급히 처리가 필요”로 한다.

제11조 중 “제63조를” “제64조”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을 “매각이 필요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할것이 있을”을 “필요할”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 및 청·소”를 “실·과 및 소·동”으로,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을 “매수가 필요할”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신축등 신청)”을 “(신축 등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면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정리후”를 “등기정리 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면

제24조의 제목 “(대장 및 도면조제)”를 “(대장 및 도면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박등”을 “선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의한”을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증·감”을 “증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매월말 기준 익월”을 “매월 말 기준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말”을 “매년 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면

제33조의2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같은 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 중 “제42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각각 “사용대상 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5일 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illegible]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직 위 성명 (서명)

인계자 소 속 직 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당초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액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재 산 종 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법정동	지번							단가	평가액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구 동 번지								
임 차 물 건	토 지	지목			건 물	종목			부 속 물	명 칭	수 량
		지적	총면적	m ²		구조					
			임차면적	m ²		건평	전체	m ²			
							임차	m ²			
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불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대부받는 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는 자가 채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구 분			년			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연번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
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회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
하는 화재 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
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
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 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
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
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
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
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
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0조(어구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
자”가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
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
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 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기관명 인천광역시구

대표자 구청장 ○○○

주 소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천광역시서구”,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일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
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대표자 구청장 ○○○(인)

(교환대상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시 구 동 가(로) 읍 면 리 번지															
소 재 지															
물건표시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부속 사항		
		지목				종목				구조				구조	
		면적				전 체 m ²				면적				전 체 m ²	형식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갱신) 년월일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 ²)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m ² 당 단가 (B)	금액 (A×B)	
								〇〇단체	〇〇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시 구 동 번지 호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지	구 조	조 충
	건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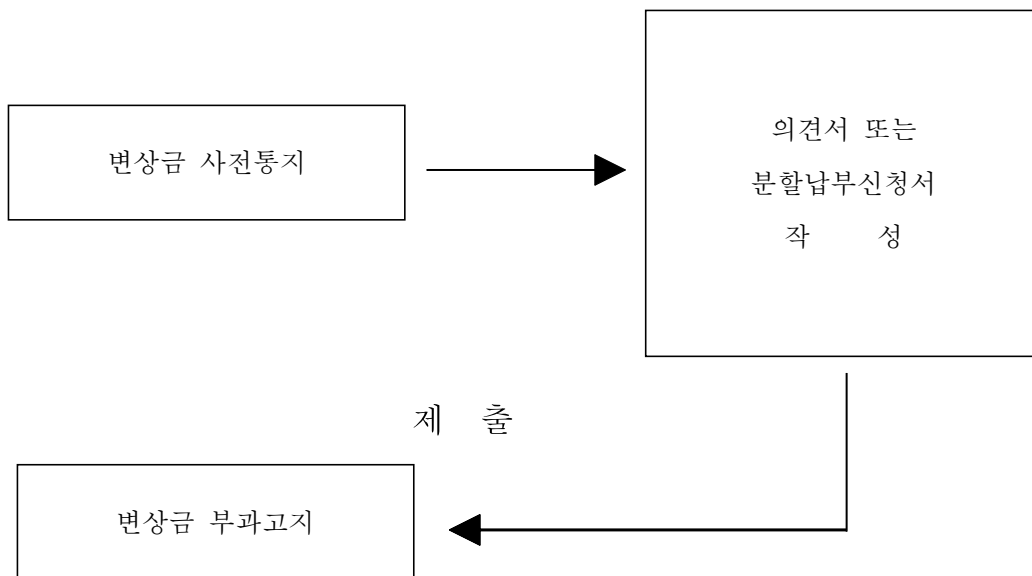
_____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 의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m ²)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 (원)	연 부 이 차 (원)	합 계	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성명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을 신청을 허가함.

20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 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신탁주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

"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 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 [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 [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천광역시서구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u> 」의 시행에 -----.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생략)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u>의하여</u>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 -- <u>따라 지정된 사람</u> ----- ----- <u>인</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u>구청장의</u> 승인을 얻어 <u>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u>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②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u>관계 공무원에게</u> -----.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u>구</u> 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u> -----.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u>실</u>	④ ----- <u>현</u>

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신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과 -----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토지지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유	3. 사유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u>불후의</u> 경계표 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 ----- <u>훼손되지 아니</u> <u>하는</u> -----.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 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유	3. 사유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재 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 관의 재산을 <u>회계간</u> 에 이관코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 ----- ----- <u>회계 간</u> ----- ----- ----- ----- ----- ----- -----.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 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	제10조(화재보고) ① ----- -----

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원인

3. ~ 5.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

----- 지
체 없이-----
--.

1. (현행과 같음)

2. 원인

3. ~ 5. (현행과 같음)

② ----- 긴급히 처리
가 필요-----
-----.

제11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각신청) -----
----- 매각이 필요할-----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u>의한다</u> .	----- <u>따른다</u> .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	제16조(교환) -----
재산의 교환을 <u>요할것이 있을</u>	----- <u>필요할</u> -----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	-----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
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	-----
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	-----
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u>지체없</u>	----- <u>지체 없</u>
<u>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u>	<u>이 등기·등록 그 밖에</u> -----
<u>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매수신청) ① <u>실과 및 청</u>	제22조(매수신청) ① <u>실·과 및</u>
<u>·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u>	<u>소·동</u> ----- <u>매수가</u>
<u>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u>	<u>필요할</u> -----
<u>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u>	-----
<u>여야 한다</u>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10. 기타 필요한 사항</u>	<u><삭 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u>신축등 신청</u>) ① 재산관리	제23조(<u>신축 등 신청</u>) ① -----
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	-----
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
변경을 <u>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u>	-----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도면

4. · 5. (생략)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도면

5. (생략)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생략)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
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
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
음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

1. · 2. (현행과 같음)

3. 도면

4. · 5. (현행과 같음)

② -----
-----등기정리 후

1. ~ 3. (현행과 같음)

4. 도면

5.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따라 -----

----- 선박 등 -----

-----.

③ -----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
출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
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
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4. (생략)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
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
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
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
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

- 어느 하나에 따른 ---.

1. ----- 「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
따른 -----

3. 4.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 증감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

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
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까
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
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
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
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
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
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도면

--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

-----.

② -----
----- 매년 말 -----

-----.

③ -----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

--.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도면

②·③ (생략)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
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
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
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청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
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
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
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용허
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
상금부과-----

----- 따르고 -----

----- 따른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 ① -----

----- 사용대상 공무원이 -----

----- 공무원 중 -----
-----.

② -----
----- 따
른다.

③ -----
----- 사람은 -----

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
지 제2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
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5일 전-----

-----.

<삭 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31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018년도 제2차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못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본 송달
2. 공고기간 : 2018.06.04.~06.18.(14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청게시판, 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	보상대상 물건	사유	비고
1	이수용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2, 224동 1401호 (연희동, 청라웰카운티19단지)	인천시 서구 경서동 249-27	수취인 부재	반송

5.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52)
7.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32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2018년도 제4차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신청 사항이 송달되지 못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사항 송달
2. 공고기간 : 2018.06.04.~06.18.(14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청게시판, 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52)
7.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18년 제4차 손실보상 재결 공시송달 대상자

사업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	경서동	249-159	포장 외	김순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103길 17-4, 401호(역삼동)				
2	경서동	350-1	컨테이너 (창고) 외	이상목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27-11, 402호(검암동,청운하이츠)				
3	경서동	249-61	매실나무 외	이정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4, 301호(경서동,정상빌딩)				
4	경서동	249-148	앵글 외	전표성 (삼원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148 (삼원테크)				
5	경서동	249-30	통신설비 외	㈜루트	인천 서구 경명대로414번안길13-7(경서동, 루트)				
6	경서동	249-95	컨테이너 외	서일종합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56(경서동,서일종합건설)				
합 계				6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의 폐지 및 감면대상을 신설
- 일몰이 경과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과 중복 규정 삭제 (안 제3조)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4조)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일몰기한 개정 (안 제5조)
-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와 중복 규정 삭제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의 폐지 및 감면대상을 신설
- 일몰이 경과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과 중복 규정 삭제 (안 제3조)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4조)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일몰기한 개정 (안 제5조)
-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와 중복 규정 삭제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

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제5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

현행	개정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

현행	개정안
	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현행	개정안
	<u>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u> <u>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u> <u>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u>

현행	개정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현행	개정안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u>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u>	<u>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u>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2020 년 12월 31일-----. 제7조 <삭 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맞게 개정함.
- 인용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맞게 개정함.
- 인용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 개정안: “별지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참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과년도”를 “지난 연도”로 하고,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구 세입률”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로 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을 “그 밖에 관계 법령”으로 하고, “기간등 해당부서”를 “기간 등 해당 부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구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

제1호에도”로 하며,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기준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 미수액중”을 “지난 연도 체납액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징수액”을 “그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을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100분의 5”를 “100분의 5(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상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를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를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로 하고,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따른 포상금은 미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보한 자”를 “제보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이외의 부분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미수 금징수”를 “체납액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종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당해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과년도”를 “지난 연도”로 하고, “기록, 정리”를 “기록·정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포상금지급”을 “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로 하며, “하는자는”을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으로 하고,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하며, 단서 중 “다수”를 “여러 명”으로 하고, “일괄이체후”를 “일괄이체 후”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허위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가산한다”를 “가산(加算)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u>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u> 1. <u>과년도</u>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u> 이하 같다.) 2. (생략) 3. (생략)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구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	<u>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u>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 ----- 필요----- -----. 제2조(지급범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1. <u>지난 연도</u> ----- ----- (계약직 공무원-----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u>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u> ----- ----- 그 밖에 관계 법령----- -----

현행	개정안
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u>기간등</u> <u>해당부서</u>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u>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u>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u>공무원에 대하여는</u>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u>과년도 미수액중</u>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2. <u>과년도 미수액중</u>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기간 등 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 ----- ④ 제1항제1호에도 ----- -----공무원에게는 ----- ----- ----- 제3조(지급기준) ① ----- ----- 각 호와 같다. 1. <u>지난 연도 체납액 중</u> ----- ----- ----- 2. <u>지난 연도 체납액 중</u> ----- -----

현행	개정안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 -----
3. <u>과년도 미수액</u> 중 3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u>지난 연도 체납액</u> 중 ----- ----- ----- -----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u>그징수액</u> 의 100분의 10	4. ----- ----- ----- ----- ----- <u>그 징수액</u> -----
5. <u>납세의무성립일</u> 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u>100분의 5</u>	5. <u>납세의무성립일</u> 부터 1년 이상 ----- ----- ----- <u>100분의 5</u>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u>10만원이상 30만원이하</u> . 다만, <u>공무원제안규정</u> 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u>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6. ----- ----- <u>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u> ----- 「 <u>공무원제안규정</u> 」에 따라 ----- ----- ----- <u>따른 포상금은 미지급</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	② -----

현행	개정안
상금을 부과자료를 <u>제보한</u>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1. 지급기준에 의한 <u>미수금징수</u>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u>한다</u>.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의를 위하여 <u>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 <u>제보한 사람</u>----- ----- -----. 제3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u>체납액 징수</u> ----- ----- 2. ----- ----- ----- ----- <u>한다</u>.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u>위원회</u>----- ② ----- -----. 1. 제2조에 따른 ----- 2. 제3조에 따른 -----

현행	개정안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대장비치)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3. 제3조의2에 따른 ----- ③ ----- ----- 기획예산실장, ----- -----. ④ ----- ----- 3분의 2 ----- ----- 위원 중 ----- ----- 해당 위원 ----- -----. 제5조(대장비치) ----- ----- 지난 연도 ----- ----- ----- 기록·정리-----.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 -----.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 ----- 하는 사람은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④ ----- ----- 분임징수관 ----- -----.

현행	개정안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최소,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제7조(포상금 지급) ① ----- 제6조에 따른 ----- ----- 해당 연도 ----- 다음 연도-----. ②----- 각 호 ----- --- 해당 ----- -----. ③ ----- 따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 ----- ----- -----방법으로 ----- ----- 여러 명----- ----- 일괄이체 후 ----- -----. 제8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 ----- ----- ----- -----관계 공무원----- ----- -----. ② ----- 해당 ----- ----- -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u>기간동안</u>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u>규정에 의한</u>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u>가산한다</u>.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 ----- <u>기간 동안</u>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 -----<u>가산(加算)한다</u>. 제9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 공고 (안 제4조)
- 나.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안 제5조)
- 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6조)
- 라.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7조 ~ 안 제9조)
- 마.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안 제12조)
- 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등(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 공고 (안 제4조)
- 나.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안 제5조)
- 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6조)
- 라.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7조 ~ 안 제9조)
- 마.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안 제12조)
- 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등(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세무1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기획예산실장·홍보미디어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u>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u>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u>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현행	개정안
<신 설>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 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

현행	개정안
<신 설>	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세무1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기획예산실장·홍보미디어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

현행	개정안
<신 설>	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 다. 압류 재산의 인수·인계서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 다. 압류 재산의 인수·인계서 등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구 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제3조 중 “징수조례”를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이라 한다)”를 “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서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u> <u>시행규칙</u>	<u>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의 시행에----- ----- -----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서구 금고</u> (이하 “ <u>구금고</u> ”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 <u>지방세수납대행기관</u>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u> ----- ----- ----- -----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 <u>법</u>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 <u>영</u> ”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이하 “ <u>조례</u> ”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 ----- ----- ----- ----- <u>징수 조례</u> ----- ----- -----

현행	개정안
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 -----이라 한다)은 ----- ----- ----- ----- ----- ----- ----- -----.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 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변경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관련 용어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구금고 지정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반영

제3조(심의 및 평가) 제2항 제2호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중 심사기준 제1호 나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 명칭변경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청장(참조 : 세무1과, 전화 : 032-560-4910, 팩스 : 032-560-22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변경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관련 용어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구금고 지정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반영

제3조(심의 및 평가) 제2항 제2호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중 심사기준 제1호 나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 명칭변경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3. 참 고 사 항

가. 개정안: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심사기준 \ 위원별										합계	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변경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관련 용어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구금고 지정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반영

제3조(지정기준) 제2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평가 세부항목 명칭 변경(별표 1)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평가항목 제1호 나목)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명칭변경 (별표 2)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제1호 나목)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별표 1 / 평가항목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 전화 : 032-560-4910, 팩스 : 032-560-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변경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관련 용어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구금고 지정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반영

제3조(지정기준) 제2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평가 세부항목 명칭 변경(별표 1)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평가항목 제1호 나목)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II.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명칭변경 (별표 2)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제1호 나목)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별표 1 / 평가항목 제1호 나목)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금고지정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3 (7)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6) (7) (3)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